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021. 2.



목 차

I. 사업개요	
1. 목 적	1
2. 개 요	1
II. 건축설계공모 개요	
1. 건축 설계공모의 목적, 방법, 일정 등	2
2. 제출도서 작성방법	5
3.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8
4. 기타사항	12
III. 설계 지침	
1. 건축설계 일반	15
2. 건축설계 조건 및 기준	16
3. 세부 설계지침	17
4. 기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	21
IV. 서식목록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2
[서식 2]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	23
[서식 3] 서약서	24
[서식 4] 위임장	25
[서식 5] 공동수급 협정서	26
[서식 6] 대표자 선임계	32
[서식 7]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33
[서식 8] 설계공모안 제출서	34
[서식 9]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35
[서식 10] 충별 세부용도 및 면적	36
[서식 11] 관련법규 검토서	37
[서식 12] 예정공사비 내역서	38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39
[서식 14]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40
[서식 15] 설계도면 표지규격	41
V. 제공자료	
[붙임 1] 배치도/위치도	42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2019.4.30.)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준수합니다.

I. 사업개요

1. 목적

도내 장애아동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해소와 생애 주기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북권을 대표하는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별동 증축, 재활치료 시설확충과 소아재활에 대한 공공의료지원체계 구축에 기여코자 함.

2. 개요

가.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다.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554-6외 1필지)

라. 대지면적 : 37,765m²

마.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개년 사업)

바. 사업규모 : 별동 증축 지하1층 ~ 지상4층(1,840m²)

※ 전체연면적(±3%범위)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

사. 주 용 도 : 의료시설

아. 건폐율/용적률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자. 예정공사비 : 5,242,000천원(VAT포함)

※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구조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차. 설계용역비 : 254,623천원(VAT포함)

※ 건축(인테리어 포함),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시험굴착, 지질조사비용, 측량비용, 손해배상 공제료, 각종 인허가, 설계자문, 계약심사, 조달청 공사 원가검토 및 설계 적정성검토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수수료)이 포함된 사항임(단, 설계공모 입상작 상금은 별도)

※ 당선자는 계약 시 상기 전기·통신·소방 등 각종 용역수행(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 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함

카. 설계공모기간 :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60일 이상(공휴일 포함)

타.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파. 공사착공예정일(공사기간) : 2022년 03월 ~ 2022년 09월(예정)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 착공일 등은 변동될 수 있음

II. 건축설계공모 개요

1. 건축 설계공모의 목적, 방법, 일정 등

가. 목적

건축 설계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성, 효율성을 갖춤과 동시에 작품성을 갖추어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건축 설계공모의 방법 : 일반 설계공모

다.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위 “1)”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 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작품 제출 권리가 없으며, 공동 응모인 경우에 현장설명 참석은 응모업체 중 1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경우 유효함)

5)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응모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라. 공모일정

구분	내 용	공모일정	비 고
1	설계공모공고	2021. 02. 23(화)	조달청 나라장터
2	응모신청서 등록 (등록마감일)	2021. 03. 02(화) 09:30 ~ 15:00까지	청주의료원(재무회계팀) ☎ 043)279-0124
3	현장설명회	2021. 03. 02(화) 15:30부터 ~	청주의료원(시설관리팀) ☎ 043)279-0133
4	질의접수	2021. 03. 15(월) ~ 03. 16(화)	서면제출 또는 Fax 043)279-0135 09:30 ~ 16:00까지 접수분에 한함
5	질의답변	2021. 03. 23(화)	개별통보(E-메일)
6	공모안 제출	2021. 04. 30(금) 09:30 ~ 17:00까지	청주의료원(자혜학당)
7	작품심사(예정) 및 당선작 결정	2021. 05. 06(목)	청주의료원
8	심사결과발표(예정) (당선작 발표)	2021. 05. 07(금)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9	도서 등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미반환시 우리원에서 임의처분.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통보함

마. 응모신청서 등록

1) 일 시 : 2021. 03. 02.(화) 09:30 ~ 15:00 까지

2) 장 소 : 청주의료원(재무회계팀) 행정센터 2층

3) 등록방법 : 설계공모참가자 직접방문 등록(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 복사된 사본의 경우 매 페이지마다 “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
기재후 확인필(사용인감 날인)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나) 국내 건축사면허증(또는 자격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다) 국외 건축사면허증(또는 자격증) 및 국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라)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서식 2】

마)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서식 3】

바)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4】

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 아)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자)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옹모로 참여할 경우) 1부 **【서식 5】**
- 차)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6】**
(공동옹모로 참여하거나, 단일옹모로 참여할 경우라도 공동대표일 경우)
- 카) 건축사 협회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지 사실확인에 관한 증빙서류 1부(공동옹모자 포함)
☞ 본 설계지침서 ‘Ⅱ. 건축설계공모 개요 1.다.6) 응모제한’ 참고할 것
- 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임의양식, 공동수급구성원 전원 연명날인)
- 4) 기타사항
-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하며, 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바. 현장설명회(의무사항)
- ※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참석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간주(시간 엄수)
- ※ 응모참가자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 1) 일 시 : 2021. 03. 02.(화) 15:30(시간 엄수) 시작
 - 2) 장 소 : 청주의료원 행정센터 2층 중회의실
 - 3) 참석자 : 설계공모 참가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 4) 지참서류
- 가) 신분증
-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위임받은 경우)
-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
- 사. 질의 및 답변
- 1)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용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서를 서면 **【서식7】**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043)279-0135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제출 불가, 제출일 당일 접수분에 한해 유효함)
 - 2) 질의는 참가업체(공동옹모의 경우 대표업체를 통해 질의)별로 1회로 제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 서면 또는 팩스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 3) 질의는 질의서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 043)279-0133로 전송여부를 확인한다.
 - 4)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대표자 명의로 질의

하여야 한다.

- 5)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응모신청자 전원에게 E-메일로 개별통보 한다.
- 6)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7) 본 설계공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구두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 8) 팩스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아. 공모안 제출(접수)

- 1) 제출일자 : 2021. 04. 30(금) 09:30 ~ 17:00까지

※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 2) 제출장소 : 청주의료원 행정센터 2층 자혜학당

- 3) 제출방법 : 설계공모 참가자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4) 제출서류

가) 설계공모안 제출서 【서식8】

나) 제출도서 종류

구 분	규격(mm)	수 량	비 고
1. 심사용 설계도판	A1(841×594)	1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도판
2. 설계 설명서	A4(210×297)	20부	상철, 30매 이내(1면 인쇄)
3. 설계 도면	A3(420×297)	20부	횡철, 30매 이내(1면 인쇄)
4. 설계 도서 CD		1EA	

- 5) 기타 : 참가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2. 제출도서 작성방법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 1)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도서제출은 하나로 묶어 포장하되 이중으로 하고, 설계도면이나 설계 설명서 등 각종 서류에는 설계공모 참가자를 유추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응모자 임의의 고유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함)

- 나)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 다) 심사 전에 심사위원 및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사전접촉과 관련하여 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 가)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상단에 표현한다.
- 나)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다)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라)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을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마) 제출도서에는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은 불가하다.
- 바)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등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표현은 흑색으로 하며, 흑백계통의 무채색은 사용가능하나 일체의 유채색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단 설계 설명서 중 재료 및 색채에 관한 계획만 유채색 사용 가능, 이외 유채색 사용 시 실격 처리함)
- 사) 모든 제출도서의 제본은 클립 등 사용은 불가하며 접착제로 제본한다.
- 아) 쪽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에 “1”부터 표기한다.
- 자)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사용

- ① 3차원 이미지는 재질, 질감, 색상, 나무, 자동차, 사람 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② 3차원 이미지는 포토샵 등 어떠한 리터치나 렌더링하지 말아야 한다.

2) 심사용 설계도판(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도판)

- 가) 도판은 공모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횡장 방향(장변이 수평방향으로 작성)으로 두께 10mm의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나) 도판의 표현은 흑백계통의 무채색으로만 가능하며, 유채색은 사용할 수 없고 색채 사용 시 실격 처리한다.

3) 설계 설명서

- 가) 설계도면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설계 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 나) 규격 A4(가로210×세로297mm)로 상단을 접착제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 다) 설계 설명서 1부의 매수는 30매(표지 제외, 간지사용 불가,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하되 겉표지는 백색아트지(200g/m²이하)로 하고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라) 설계 설명서의 표지는 본 지침서에 첨부된 소정 양식에 의하며,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서식 14】

마) 설계 설명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각 페이지 메인 타이틀, 제목이나 소제목을 제외한 내용상의 글씨는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2포인트로 작성한다. 단 그림 등 삽입내용 안에 표시되는 글자는 글자체 및 크기 제한이 없으나 심사위원이 인지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한다.(글씨 및 내용에 유채색 사용 금지)

바) 다음 도면의 종류와 순서대로 작성한다.(설계자 임의변경 불가)

① 표지

② 목차

③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 9】, 총별 세부용도 및 면적 【서식 10】

④ 기본계획방향(계획안의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 개념 및 그림) 및 대지 현황 분석

⑤ 건축계획(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⑥ 조경 및 외부 공간 계획

⑦ 동선계획(보행 및 차량) 및 주차계획

⑧ 재료 및 색채에 관한 계획(유채색 사용가능)

⑨ 토목, 구조계획(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관련 등, 구조해석 모델 삽입 시 무채색 사용)

⑩ 설비계획(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포함 등)

⑪ 에너지 절약계획

⑫ 신공법, 신소재 등에 관한 사항

⑬ 관련 법규 검토서 【서식 11】, 예정공사비 내역서 【서식 12】

사) 설계 설명서의 쪽번호는 중앙하단에 표시할 것.(전체쪽번호-쪽번호)

예) 30-1, 30-2,……, 30-30

4) 설계도면

가) 규격 A3(가로420×세로297mm)로 횡장방향으로 좌측을 접착제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나) 설계도면 1부의 매수는 30매(표지 제외, 간지사용 불가,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하되 겉표지는 백색아트지($200g/m^2$ 이하)로 하고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다) 설계도면의 표지는 본 지침서에 첨부된 소정 양식에 의하며,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서식 15】

라) 다음 도면의 종류와 순서대로 작성한다.(설계자 임의변경 불가)

① 표지

- ② 목차
 - ③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 ④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1컷에 한하며 심사용 설계도판 제출도서와 같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단 유채색 사용금지)
 - ⑤ 배치도(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개념 표기)
 - ⑥ 각층 평면도
 - ⑦ 입면도(4면)
 - ⑧ 단면도(종, 횡단면도)
 - ⑨ 조경계획도
 - ⑩ 동선 및 주차계획도
 - ⑪ 재료 및 색채에 관한 계획(유채색 사용금지)
 - ⑫ 구조계획(구조해석 모델 삽입 시 무채색 사용), 에너지절약계획 등
- 5) 설계도서 CD(1매)
- 가) 제출목록 : 3차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작 파일(pdf파일 제출 가능)
(파일명 예시 : 설계도판.pdf, 설계도면1~30.dwg, 설계 설명서.hwp 등)
 - 나)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CD 등에 암호,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작품심사 및 입상작 선정

- 가. 심사위원회 운영
 - 1)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 명단
 - 가) 심사위원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심사위원 명단 : 응모마감일 홈페이지 공개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심사위원의 기피, 제척
 - 가)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서식 13】
 - 나) 심사위원이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1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
 - 3) 심사위원장 선정
 -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가)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7명중 4명 이상 참석 시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나)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녹음한다.

5)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평가결과는 입상작에 한하여 순위와 회사명을 청주의료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6) 기타

가)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 할 수 있다.

나)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에 따른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과 평가기준은 아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작품심사기준

1) 절차기준

가) 심사위원회는 배점 기준에 의한 채점제로 평가 작품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결방식에 의한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회는 채점제에 의한 작품평가에 대하여 배점기준에 의거 항목별로 상대 평가하여 「작품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후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가·감점대상 및 가·감점 사유를 심의하여 가·감점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투표제에 의한 평가방식 또한 가·감점대상 및 가·감점사유를 심의하여 가·감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함)

라) 심사위원회는 평가대상에 대한 「작품심사 결과」와 「가·감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을 결정한다.

2) 심사기준

- 가) 작품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에 따른다.
- 나)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며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설계 공모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다.
- 다) 종합평점 산정방식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후 가점 및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 한다. 이때 산술평균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배치 계획	○ 배치 및 기준시설 활용도	30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차량주차, 보행자 및 차량 이동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30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환자 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20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 친환경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15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냉난방 및 급수, 가스공급 등을 설비 계획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및 특수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5
	○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100

*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제로 평가할 수 있음.

라.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 가) 발주기관은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을 검토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점사항에 대해서도 감점기준에 의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에 대해 감점 처리한다. 단,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아래 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 적용한다.

2) 감점기준

가) 총수 초과 시(-3점)

나) 제시한 연면적($\pm 3\%$)보다 초과 또는 미달하게 면적 산정 시(-1점)

다)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0.5점/도서종류별)

라) 제출도서 부족(-0.2점/각 부수당)

마) 제출도서 기준매수 초과(-0.1점/각 매수당)

바) 설계 설명서상 글자체, 글자크기 위반(-0.5점/각 건당, 단 -3점 이내)

사) 건축 관계법규 위반(-0.5점/각 건당, 단 -3점 이내)

– 도시계획 저촉,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의 설치,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부설주차장(주차면수),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3) 실격기준

가) 참가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중대하게 위배되어 실현 불가능한 설계안을 제출한 경우

다) 사업규모, 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pm 10\%$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라) 건축대지의 형태, 범위, 지적을 임의 조작 설계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마)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의 종류와 순서를 임의 변경한 경우

바)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사) 설계 설명서상 재료 및 색채에 관한 계획 외의 제출물에 유채색을 사용한 경우

아) 공동옹모인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자)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차)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마. 입상작 발표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며, 입상결과는 서면통보 및 청주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바. 입상 작품수 및 보상

1) 당선작에게는 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기타 입상작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21조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차등 지급한다.

2) 입상작 보상내역(아래표는 예시이며, 정확한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위:천원)

입상자가 2인일 경우	우수작	가작1		
	10,000	5,000		
입상자가 1인일 경우	우수작			
	10,000			

3)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당선자 및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상작 보상금 청구 및 수령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 2) 공모안중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3)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 4) 응모자는 국내 소아 재활전문 병원 등 유사 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6)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 7)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당선 이후 조건

- 1)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선자 결정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이 중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때에는 용역 공정률의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실비 정산한다. 또한 사업 규모의 변경이나 의료기관 특성상 진료부서 및 사용부서의 요청에 의한 변경이 있을 경우 당선안의 변경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계속 진행한다.
-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

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 3)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며 당선자가 계약지정일 까지 계약하지 않을 때에는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 용역비로 지급한다.
 - 4) 당선자는 심사위원회, 설계자문, 발주기관의 검토결과 등에 의해 설계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보완·변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당선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주요행정절차 :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발주기관), 기본설계심의, 지방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건축협의, 계약심사,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구조심의, 각종 인허가 등 기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포함
- 6)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업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설계공모 공동응모자 상호(공동응모일 경우)간,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 각 관련주체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를 명시한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당선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에 수반되는 업무(설계도서 및 자료 제공 등)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설계수행자가 부담한다.
 - 8) 공동참여업체는 발주기관과 상의 없이 계약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9)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수작 설계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0) 해당건물은 대지내 공개공지 위치에 별동 중축하는 건축공사로 추후 구조심의 등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는 설계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성실히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 11) 설계용역기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 등이 포함되고, 각종 인·허가 및 설계심의 기간 등도 용역기간에 포함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각종 인허가의 지연 등에 의해 용역중지 요청이 있을시 중지기간 만큼의 용역 기간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될 수 있으며 용역중지 기간 중에도 발주

기관의 요구 자료제출이나 인허가 수행, 각종 인증 수행 등의 과업수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12) 당선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작성한 과업지시서 및 본 지침을 따른다.

다. 제출 작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

- 1)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고 주최자가 보관한다.
- 2) 당선작의 저작권 등 법적 소유권은 당해 건축설계공모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발주기관은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작을 사용할 수 있다.
- 3) 발주기관은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4) 주최자는 응모작품에 대해 당해 응모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응모작품의 반환

- 1) 응모작품의 반환은 발주기관에서 당선작품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단, 접수된 1부는 발주 기관에서 보관용으로 사용)
- 2) 반환기한 내 인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에서 임의 처리한다.

마. 특기사항

- 1) 모든 증빙자료는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부서의 결정에 따르되 서로 협의하여 체결한다.
- 3)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4) 당선발표 이후라도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실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실격처리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 작품제출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6) 계약상대자는 최종 실시설계 후 설계금액이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사비 내로 재설계하여야 하며, 재설계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비 내로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III. 설계 지침

1. 건축설계 일반

가. 기본방향

-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유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모든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단, 발주기관이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 4) 대상지의 현재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인접건물, 대지 및 도로경계선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배치도내에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 5) 이용자의 특성, 접근성, 실용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외관과 배치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위환경과 조화되게 설계한다.
- 6)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한다.
- 7)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공사비 절감은 물론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열손실 최소화)에 경제성 있게 계획하며, 지나친 장식은 배제한다.
- 8) 공모안은 발주기관의 요구 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9)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통신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의료시설에 관련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나. 설계의 원칙

- 1) 설계의 원칙 : 쾌적성,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감염관리 용이성,
 - 가) 쾌적성 :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도모한다.
 - 나) 편의성 : 장애아동 재활환자 및 그 가족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공간으로 설계한다.(낮병동, 외래, 재활치료실 등 기타)
 - 다) 내구성 : 시설 내구성을 고려한 건축적 안목이 필요하고, 가구 재료와 건축 재료의 선택 시 내구성을 고려한다.

라) 안전성

- ① 공공시설로서의 안전성(재난·재해, 방범등에 대한 안전성을 포함)을 최대한 확보한다.
 - ② 장비, 가구, 전기 및 스위치 등 내부시설 요소에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마) 친환경성 : 자재, 가구 및 페인트 등 모든 요소의 친환경·저공해 자재를 사용하고, 실내 통풍과 환기시설을 확보한다.
- 바) 에너지효율성 : 공공건물 디자인은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자연 채광시설, 자연환기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채광 및 환기 관련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다.
- 사) 감염관리 용이성 : 의료법 및 의료기관 인증기준 등 내원객의 병원 내 감염관리에 용이하도록 건설자재와 조닝계획, 병상배치 간격, 각종 설비기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 조건 및 기준

가. 공통사항

- 1) 배치계획 및 법적검토는 건축법, 충청북도 및 청주시 건축조례, 기타 관련 지침, 고시,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공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안내서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구조는 별동 증축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입면계획은 외형 및 내적 실 용도에 조화를 두어 계획하여야 한다.
- 3) 의료시설 건축물에 적합한 관련법을 적용하여 냉·난방 방식을 결정 하여야 한다.
- 4) 고효율 기자재 설치·사용되는 전기제품은 고효율 기자재로 설치한다.
- 5)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초기뿐만 아니라 사용년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시 유의사항

- 1) 모든 시설은 최소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및 중앙 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동시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 2) 공익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부서들은 같은 인접된 구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건물간 연계 배치, 유기적 동선확보를 통해 이용자 편의와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 낮병동, 치료실 등 진료관련 공간배치 시 감염관리기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각 진료과(실)별 별도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5)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각 세부시설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기준에 맞추어 영역별 계획이 되어야 하며 충간, 구역 간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6) 주차대수는 최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고 종합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주차대수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
- 7) 각 실별 의료장비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세부설계지침

가. 배치계획

- 1) 입지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환자의 접근성, 건물 인지성, 기존 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2) 부모쉼터 및 편의공간을 설치,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3) 통로는 사람과 자동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 현관까지의 진입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한다.
- 4) 개방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 공간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외부공간이 조성 되도록 하고 건물의 주출입구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나. 평면계획

- 1) 중축동과 본관 또는 별관 간의 동선 연결계획을 수립하며 충별 기능은 접근이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 2) 중축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선을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승강기, 계단 등의 수직 동선을 설치하고, 주요 동선이 수평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고려한다.
- 3) 내부평면의 변경에 대비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정적 요소(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와 변화적 요소(병실, 치료실 등)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주행위공간과 보조공간의 위치를 고려하며, 가변성이 요구되는 공간의 칸막이벽은 철거 및 재설치를 위한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4) 화재 시 어떠한 지점에서도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재활환자나 병실같은 공간의 경우 화재 발생지점에서 수평방향으로 1차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방화구획, 피난동선 및 실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 5) 병원 내 모든 공간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6) 엘리베이터는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7) 복도는 휠체어 및 침대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또한, 병실 등에도 침대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휠체어나 침상의 이동에 의한 파

손이나 귓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감 재료를 고려 하여 계획한다.

- 8) 본관건물과 유기적으로 계획하고, 아울러 지상주차 및 외부 공간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9) 재활치료영역은 재활 및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영역별 조닝 및 각 실의 배치가 되도록 한다.
 - 10) 접수구역은 출입구, 진료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 11) 접수, 진료, 치료, 재활, 병동, 대기 공간 등에 따른 기본적 공간구성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이 쉽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 12) 낫병동은 인력 및 공간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한개 층에 배치하도록 하며 필요시 휠체어 및 보행보조도구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 13) 대기 공간 등의 정적 공간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진료실, 치료실 등과 시각적,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계획한다.
 - 14) 본관동과 증축건물은 동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15) 공공 재활 서비스 관련실(행정실 등)은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 16) 화장실은 의료진용, 환자용, 장애인용(남녀각각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등으로 구분하며, 병동 샤워실도 함께 마련한다. 미화관리를 위한 청소도구실도 같이 계획한다.
 - 17) 오물처리실을 계획한다.
 - 18) 데이룸, 부모쉼터, 놀이실의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 편의를 고려한 규모 확보
 - 19) 야간 방문객 출입제한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한다. 출입통제 설비, CCTV 등
- 다. 총별 소요실 및 면적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m ²)	비고
별동증축	4인병실(화장실포함)	소요면적 4실	30 ~ 45	낫병동 총 20병상 이상
	2인병실(화장실포함)	소요면적 2실	20 ~ 35	
	린넨실	소요면적 1실	05 ~ 15	
	오물처리실(병동)	소요면적 1실	05 ~ 10	
	간호사 데스크	소요면적 1실	10 ~ 30	
	처치실	소요면적 1실	05 ~ 15	
	간호사실(병동)	소요면적 1실	05 ~ 15	
	부모쉼터	소요면적 1실	20 ~ 40	
	세탁물보관실	소요면적 1실	05 ~ 10	
	놀이실	소요면적 1실	30 ~ 50	
	샤워실(병동)	소요면적 1실	05 ~ 15	

데이룸	소요면적 1실 이상	15 ~ 40	
배선실	소요면적 1실 이상	05 ~ 20	
감각통합치료실	소요면적 1실	40 ~ 50	
열전기치료실	소요면적 1실	20 ~ 30	
작업치료실	소요면적 1실	60 ~ 70	
기구치료실		30 ~ 40	
보조기상담실		05 ~ 10	
개별운동치료실		20 ~ 30	
운동치료실		60 ~ 70	
진료실		10 ~ 20	
대기 및 접수실		40 ~ 50	
언어치료실		20 ~ 30	
오물처리실(외래)		05 ~ 10	
수치료실		10 ~ 20	
처치실		10 ~ 20	
간호사실(화장실포함)		10 ~ 20	
전산화인지치료실		20 ~ 30	
ADL실		20 ~ 30	
회의실		40 ~ 60	
상담실		10 ~ 20	
교육실		20 ~ 30	
사회사업상담실(행정실)		40 ~ 60	
프로그램실(준비실포함)		40 ~ 60	
승강기홀 및 복도, 계단 실, 화장실, 청소도구실, 창고, 탕비실, EPS, PS, 저압실, 공조실 등		제한 없음	기타
공사면적 합계		1,840	

※ 관계법령에서 최소 기준 면적으로 규정한 시설면적 이외의 시설에 대한 면적은 증감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예정공사비 내에서 ±3% 이내로 하며 낮병동은 의료법 시설기준에 따른 병실기준(4인실)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지침기준에 따라 일반 기준병실 크기의 3실 이상 설치가 가능함.

라. 입면계획

- 1) 증축건물은 우리원에 진출입하는 전면 화단 공개공지에 설치될 예정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취지에 맞게 변모하는 청주의료원의 의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을 고려하여 창의성 있게 계획한다.

마. 단면계획

- 1) 기능별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수평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2)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환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시공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재료 및 색상계획

-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현대감각에 조화되도록 한다.
- 2) 사용자재는 국산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실내 색채계획은 의료시설과 업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4) 사용재료 및 설비 운영초기와 사용년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외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조경계획

- 1)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한다.
- 2) 조경이 환경 및 경관의 형성, 재활치료, 방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3) 옥외 공간 조경은 마음의 안정 효과를 높이고 재활의료센터 분위기를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계획한다.
- 4) 이용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한다.
- 5) 공간별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식재, 조경시설물 및 구조물을 도입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기타

- 1) 계획상의 실별 주용도 및 규모는 제시된 연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며, 타 소아 재활 전문병원 및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규모 및 용도를 반영,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로 규모가 명시된 사항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용도 이외의 용도가 추가되거나, 자유로운 설계를 위하여 건축물 실별·용도별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될 경우 그 사유를 설계 설명서에 설명할 수 있다.

- 3) 설계자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한 주용도 외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창의적 구상으로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다.
- 4) 시설물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 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5) 실시설계는 당선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6) 현 공사범위 건물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계획한다.
- 7) 건축물의 유지 관리비 및 에너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8) 폐기물처리비용(폐콘, 혼합, 임폐목 등)을 산출하여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에 기재한다.

4. 기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

- 가. 해당사업은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의 주요한 자산인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이다.
-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3조에 의거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발주기관에서 의뢰하고 추후 검토기관인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결과(의견)를 본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청주의료원에서 주최하는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①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② 국내 건축사면허증(또는 자격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③ 국외 건축사면허증(또는 자격증) 및 국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④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⑤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⑧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 1부
 ⑨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또는 단일응모라도 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1부
 ⑩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사본 1부

2021 . . .

신청인 : (인)
 (대표자)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귀하

----- 절 츠 선 -----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접수인 _____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 2】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 발주기관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당사는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업체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응모) 참여업체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귀하

※ 단일업체 응모일 경우 공동응모 대표업체란에 기재, 서명할 것

서 약 서

당사는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업체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응모) 참여업체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귀하

※ 단일업체 응모일 경우 공동응모 대표업체란에 기재, 서명할 것

【서식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충청북도청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설계용역
- 계약금액 : 원
- 발주기관명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칭 :
- 주사무소소재지 :
-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회사(대표자 :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서식 5-1】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설계용역
- 계약금액 : 원
- 발주기관명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칭 :
- 주사무소소재지 :
-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회사(대표자 :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 가) ○○○건축사사무소 : 건축
- 나) ○○○사무소(엔지니어링) : 전기 등
- 다) ○○○사무소(엔지니어링) : 기계 등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대표건축사사무소인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옹모 참여자
로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
터 건립』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의 공동옹모
대표 ○○○에게 위임 합니다.

2021. . .

공동옹모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인)

공동옹모 참여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인)

※ 첨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옹모에 한함) 1부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
로 작품을 제출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p style="margin: 0;">* FAX(043-279-0135)로 전송할 경우 전송 후 반드시 전화(043-279-0133)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설계공모안 제출서

※ 접수번호 : (발주기관에서 기재)

공모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재지	전화

귀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심사용 설계도판 1매(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도판)
2. 설계도면 20부
3. 설계설명서 20부
4. CD 1매
5. 참가신청 접수증(작품접수 당일 제시)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귀하

절취선

설계 공모안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FAX)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m ²
	도로현황	
	연 면 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총 수	
최고높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높이 표기할 것
외부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지상	대
조경개요	조경면적	
	식재면적	
	조경시설면적	
주차장 면적		m ²
기 타 사 항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10】

충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충 별	용 도	면 적 (m ²)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1】

관련법규 검토서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법규명 및 조항	대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서식 12】

예정공사비 내역서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품 명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구성비)
건축공사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조경시설물 포함)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전기소방, 기계소방)					
폐기물처리비					
00공사					
00공사					
소 계					
제경비 (비율계산)					
총 공사비	일금 ○○○○○○○○○원(₩○,○○○,○○○,○○○)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업명 :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 · 회피 사유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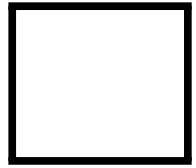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명 : (인)

【서식 14】



〈선택용지 : A4〉 〈우측정렬/위쪽 · 오른쪽 여백 고정, 네모칸 그대로
사용〉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설계설명서

2021. 00.

※ < > 안의 내용을 삭제 후 출력하여 사용할 것

【서식 15】



〈선택용지 : A3〉

〈우측정렬/위쪽, 오른쪽 여백 고정, 네모칸 그대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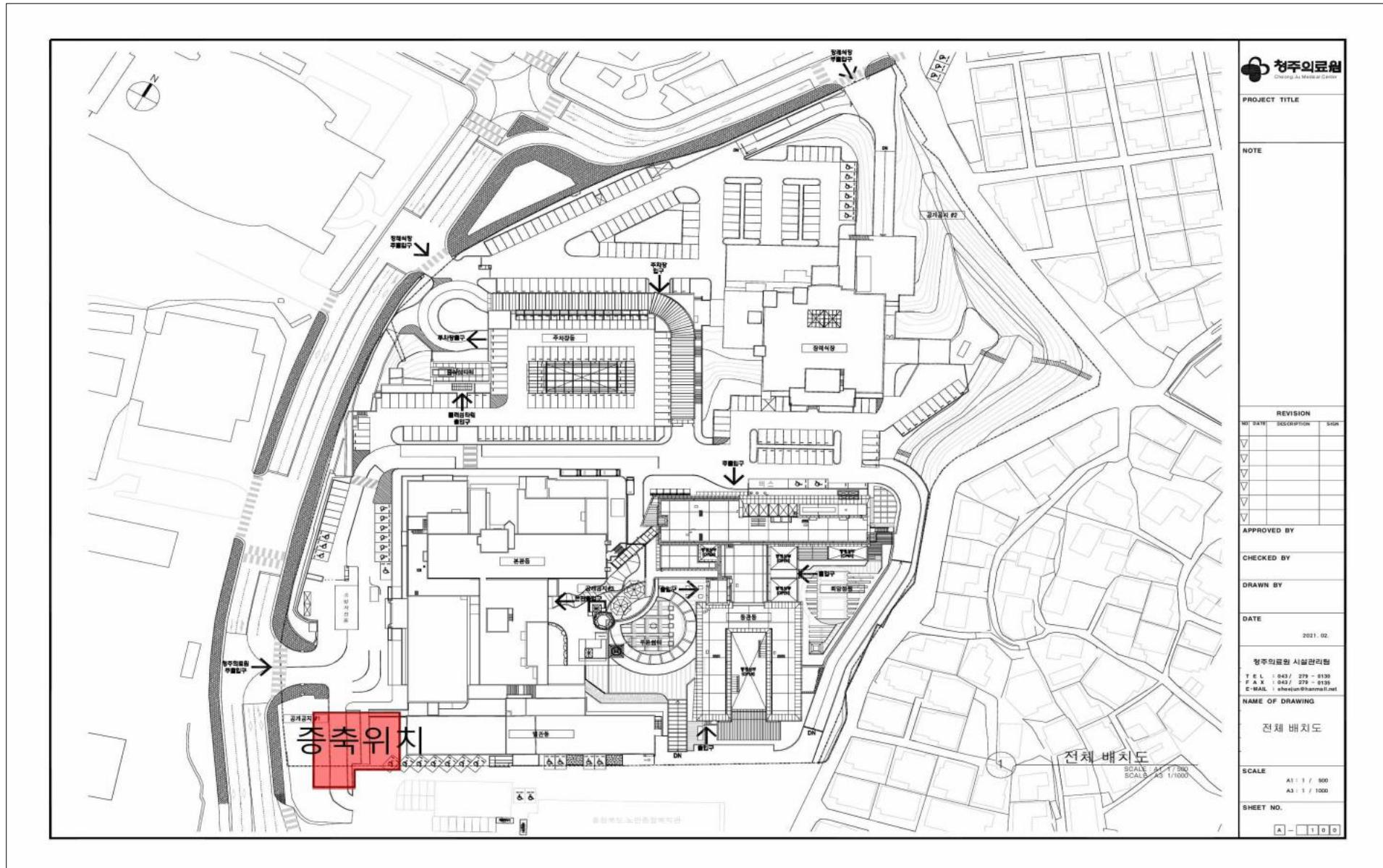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설계도면

202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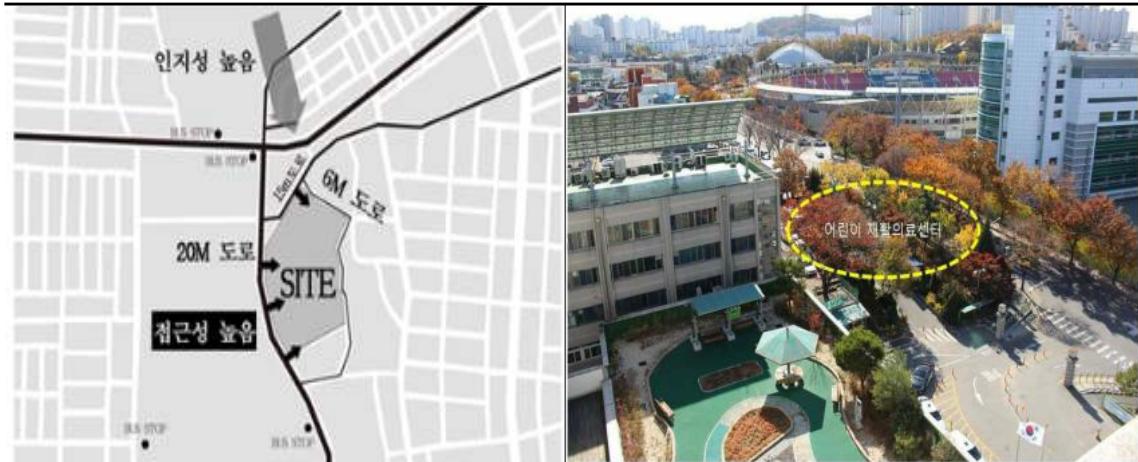
〈가운데 정렬 / 글자 그대로 사용〉

※ < > 안의 내용을 삭제 후 출력하여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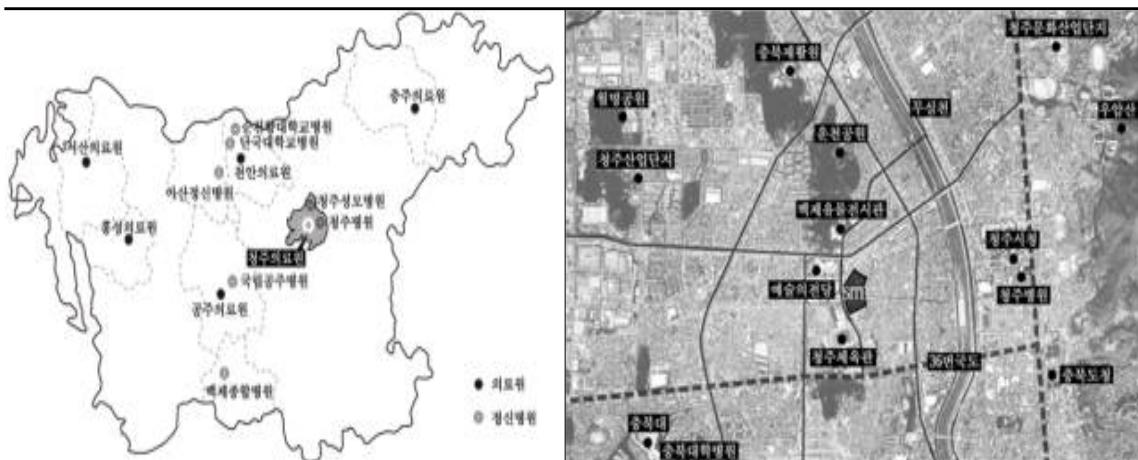
【붙임 1】 배치도



【붙임 1】 위치도



대지 정보 및 별동 중축 위치



충청북도내 지역거점 공공병원(종합병원)

청주시 내 중심부에 위치